

「아주대학교 학칙」

- 제31조(전과)**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2장 전과

제56조(정의) 전과라 함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함을 말한다.(개정 2011.11.3)

- 제57조(전과대상 및 시기)** ① 전과대상자는 제2학년 1학기 이상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학생은 재학 중 1회만 전과가 가능하다. (개정 2018.1.2)
- ②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8.1.2>

제58조(요건)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3)
(개정 2012.7.19)

1.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개 학기 평균 1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과 시 전입 허용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5%이내(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약학대학으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따로 정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
 2.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59조(공과대학 개편에 따른 전과)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한 기계 및 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환경.도시공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유로이 전과할 수 있다.(개정 2013.2.14)

1. 기계 및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2. 화학.생물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3. 환경.도시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환경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제60조(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및 전입할 학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3) (개정 2011.11.3) (개정 2013.2.14)

제61조(수업연한) 전과한 자의 수업연한은 전과 이전에 이수한 기간을 포함한다.